

第55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6年9月17日(火) 午後5時

議事日程

1. 1996年度第1回서울特別市城北區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2. 서울特別市城北區立合唱團設置條例(案)
3. 서울特別市城北區行政區域區間境界調整意見聽取(案)
4. 서울特別市城北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5. 共同住宅建築審議時都市景觀保護對策施行에따른建議(案)
6. 石串·里門洞地域電動車基地廠建設反對決議(案)

附議된案件

1. 1996年度第1回서울特別市城北區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城北區廳長 提出) 1面
2. 서울特別市城北區立合唱團設置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2面
3. 서울特別市城北區行政區域區間境界調整意見聽取(案)(城北區廳長 提出) 2面
4. 서울特別市城北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7面
5. 共同住宅建築審議時都市景觀保護對策施行에따른建議(案)(地域開發委員會 提案) 8面
6. 石串·里門洞地域電動車基地廠建設反對決議(案)(李承魯議員外15人 發議) 8面

(17時00分 開議)

○議長 柳成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장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事務局長 蔡昇基 사무국장 채승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6年度第1回서울特別市城北區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城北區廳長 提出)

(17時05分)

○議長 柳成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들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金榮植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식의원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6년도제1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議長 柳成烈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과,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심장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청장의 위임여부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沈長錫 '96년도제1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수정사항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을 대리해서 동의를 합니다.

○議長 柳成烈 네, 심장석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 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特別市城北區立合唱團設置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17時13分)

○議長 柳成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립합창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

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서화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委員會委員長 徐化錫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서화석의원입니다. 제55회 성북구의회 제2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립합창단설치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議長 柳成烈 네, 행정위원회 서화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방법은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립합창단설치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特別市城北區行政區域區間境界調整意見聽取案(城北區廳長 提出)

(17時15分)

○議長 柳成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구역간경계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行政委員會幹事 崔東煥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최동환의원입니다. 제55회 성북구의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구역간경계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면 '96년8월28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하여 '96년9월12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노원구 월계동 18

번지 월계 시영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성북구 석관동 403번지 지역을 노원구로 편입하여 달라는 청원서가 노원구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1항, 2항 규정에 의거 성북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처음 성북구에서 2회에 걸쳐 노원구에 경계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무산되었으며, 현재 노원구 월계시영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성북구 석관동 403번지를 노원구로 편입하여 달라는 노원구 요청안 도면1은 수긍할 수 없으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 노원구로 되어 있는 석계역 부근 우남아파트 지역은 생활여건상 성북구로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므로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석관동 403번지는 노원구로 편입되고 석계역 부근 우남아파트는 성북구로 편입되는 참고안 도면 3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참고안으로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과 질의 토론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柳成烈 행정위원회 최동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일괄 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承魯議員 의석에서-있습니다.)

이승로의원님. 토론하실겁니까? 나오십시오.

○李承魯議員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위원회 간사 이승로의원입니다. 연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석관1동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써 오래전부터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숙원사업을 염원해 왔습니다. 본 안건이 상정되어 최근에 상대 구인 노원구 시, 구 의원들과 교감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이 제1안 2안, 3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물론 본의원도 우리 구의 한 주민으로써 3안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구에서 조정된 3안으로 했을 시 상대구인 노원구에서 수용이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호간에 합리적인 방법은 제2안이라고 생각되어 본의원은 여러분께 3안을 반대하고 제2안으로 수정을 원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議長 柳成烈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예. 이용섭의원님.

(○李龍變議員 의석에서-3안하고 2안하고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3안을 동감을 해서 수용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로의원은 3안을 반대하고 2안에 동의를 하자고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용섭의원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담당관은 나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장」하는 이 있음)

행정위원회 소관인데 행정위원회에서 다루신 분야기 때문에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토론에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위원님이 답변하신다구요? 토론하신다구요? 지금 토론시간이예요.

(○安傑容議員 의석에서-토론요.)

토론요? 안결용의원님.

○安傑容議員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심장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구간구역 조정에 따른 이승로의원님의 궁급사항에 대한 토론의 말씀을 본의원이 다시한번 토론과 병행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와 '94년도에 걸쳐서 이 행정구간 경계조정을 우리 성북구에서 2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던바 노원구에서 반대를 해서 무산되었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이번에 노원구에서 성북구에 건의한 바를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1차 상호 합리적인 처리 방법으로 한다면 제1차 안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2차 안도 그 다음에 좀 쉬운 방법이고, 제3차 안이라는 이 내용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견 수

럼을 거쳐서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지었느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노원구와 성북구간에 어떤 이기적으로 득과 실 차이의 논하는 방법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봐서 서울시 시민이라 하면 전 국민이라 하면 그 행정 구간 경계조정을 이런 편법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그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측면에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결론을 내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3안도면 안대로 결정이 설상가상 결정이 어렵다손 치더라도 우리 성북구 의회에서 행정구간 경계조정을 원하는 취지의 논리는 이것이 최적상이다 하는 이런 방법으로 결론이 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분 이해를 하시고 그 과정을 헤아리셔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노원구에서 1차안대로 요구한 안대로 했을 때 우리 성북구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성북구안 2안대로 했을 때도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행정위원회에서 반대하던 부당하다고 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와 성북구 간에 경계 구간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3안이 그 미래지향적이고 궁극적인 목표에 가서는 2안이 최고의 적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론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3안」하는 이 있음)

3안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議長 柳成烈 조금요, 이승로의원님이 토론을 하셨는데, 우선 이것을 다루기 이전에 이승로의원님의 의견에 재청이 계신지, 재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安敦洙議員 의석에서—토론시간인데 지금, 도면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청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安傑容議員 의석에서—수정안을 발의한 이승로의원의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 부쳐야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승로의원께서는 토론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 과정에 토론으로 말씀을 했고, 이것이 어떠한 수정안 발의가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동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승로의원이 토론을 해서 재청을 일단 받아서 재청이 있었을 때는 이것이 의안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청이 없으시면 사실 이것은 성립으로 인정 안하기 때문에 토론에 그치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재청이 없으시면, 아니 여기에 대해서 재청을 하시는지 그것만,

(○金振權議員 의석에서—지금 어디에 대해서 재청이란 말씀입니까? 안결용의원님에 대해서 재청이요, 이승로의원님한테 재청이요?)

이승로의원.

(○金壽榮議員 의석에서—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지명받는 대로 나가는 줄 알고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승로의원님의 토론 의견에 재청합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려고요.)

재청을 하시면서 토론하시겠냐? 그러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晚九議員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하세요. 끝난 다음에.

○金壽榮議員 김수영의원입니다.

이미 행정위원회에서 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해 두는 것이 앞으로 역사상 기록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현재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구역간경계조정안청취의건 여기에서 여러분들 맨끝에 이면에 심사결과를 보시면 참고안, 도면3으로 의견을 결정했다, 표결결과는 성북구안 2표, 참고안 7표, 절충안 1표 그렇게 돼있습니다. 바로 절충안 1표가 제가 던진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은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아까 이승로의원님이 설명하시는데 이용섭의원님께서 1안,

2안, 3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안이라는 것은 성북구 석관동 403번지, 그러니까 화랑로를 경계로 해서 북쪽에 있는 삼각형 땅덩어리를 노원구청에 주자는 안이 제1안입니다.

그다음에 2안은 화랑로를 경계로 해서 북쪽에 있는 땅은, 이건 마찬가지로 삼각형 똑같은데 사실은 성북구청 측에서 안으로서 제시했던 안은 2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제3안은 아까 통과된 안과 같이 쉽게 말씀드리면 우남아파트 지역을 성북구 쪽으로 가져오는 안.

다음에 현재 강북교육장 있는 이북 지역을 노원구 측에 주는 안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충해서 안 드린 것은 구청 측에서 원하는 제2안인 화랑로를 경계로 해서 삼각형 땅이 있는 석관동 403번지 지역을 노원구 측으로 주는 그런 방안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남아파트 지역, 그러니까 화랑로 경계로 한 북쪽 지역인 우남아파트 지역을 저희 성북구로 편입되는 안을 제가 절충안으로 제시했던 원인은 바로 장위3동 출신 지역인데 제가 장위3동 출신 구의원으로서 이 지역은 최계락의원과 제가 더 잘 압니다. 여기는 불과 3~4m 도로를 경계로 해서 수많은 차량과 인파가 왕래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상당히 통행과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서 경계가 모호하고 이 노원구 일부지역의 저소득층에는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1차, 2차동안에 '91, '94년도에 주민 여론을 노원구 측에서 수렴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결과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논의 중에서 또 주민투표로 할 그런 사항이 있다면 투표하는 방법을 건설적인 방법으로 하는 얘기도 구청측에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결정된 사항의 번복 또는 원안대로의 통과에 관계없이 제가 인접 경계된 출신 구의원으로서 저는 구청측에서 요구한 안 제2안에 수정안인 우남아파트 지역을 성북구에 편입시키는 안으로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柳成烈 네, 김수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승로의원님이 발의하신 데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도면을 보고 의원님들이 자료가 있어야만이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먼저 배부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회의 자료가 사실은 여러분 앞에 있는 분은 있고 없는 분이 대다수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설명을 하더라도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수영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안의 자료를 볼 것 같으면,

(○李龍變議員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나왔는데요, 우리가 알아듣게끔 얘기도 하게끔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尹晚丸議員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윤만환의원님 나오세요.

○尹晚丸議員 행정위원회 윤만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의원님들 자리에 좌정하셔서 본의원이 의사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토론에는 원안토론과 반대토론이 있습니다. 단, 이승로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청과 삼청을 받아야 의안이 성립이 됩니다.

또한 안걸용의원님께서 찬성토론을 했습니다. 역시 찬성토론으로서 재청과 삼청을 받아야 의안이 성립될 줄 압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승로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했을 때 그 즉석에서 재청과 삼청을 했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이제 재청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토론으로 마칠 것이 아니라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서 정식으로 의안으로서 성립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원안토론과 반대토론 사이에 재청과 삼청을 꼭 받아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柳成烈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료가 여러 의원님들 앞에 배부되었으니까 검토해서 숙의도 하실 결정회를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40分 停會)

(17時50分 續開)

○議長 柳成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 안건은 행정위원회에서 제3안이 의견을 집합해서 결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회의에서 이승로의원님께서 제2안을 동의를 하고 재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안 3안을 놓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토론은 한분씩만 2안과 3안을 놓고 한분씩만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안과 3안에 대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안 토론하실 분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植議員 의석에서-의장님, 제가 한번 묶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2안을 토론 한번 받고 3안을 토론을 받아 가지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安敦洙議員 의석에서-표결 안해도 돼요.)

일단 끝을 내야 되니까요.

(○金光植議員 의석에서-저 토론 한번 주실렵니까?)

2안에 토론하실 겁니까?

(○金光植議員 의석에서-2안 3안을 묶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2안을 가지고 나오시든지 3안을 가지고 나오시든지 둘중에 하나를 가지고 나오세요. 2안에 토론하시면은,

(○安敦洙議員 의석에서-2안에서 3안까지 가면은 누가 뭐라고 하나요?)

○金光植議員 항상 의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장 아끼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이 주제 넘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사실 조금 답답함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청취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저나 아무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왜 우

리가 이 고귀한 시간에 이것으로 잡론을박을 해야 되나, 나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명확하게 알고 넘어갑시다. 청취, 관계공무원께서 듣고 나중 시에서 조정이 내려오면은 우리 구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는 반영에 그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관서에 계신 분들 유능합니다. 우리 구에 불이익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의 각각 의견이 다 있으시겠으나 1안을 제외한 2안 3안을 우리 관계공무원에게 시에서 조정이 있을 적에 당신네들의 득실을 따져서 잘 조정해 보십시오 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언제나 협상은 상대가 있습니다. 노원구청은 자기네들이 손해를 볼려고 그러겠습니까? 또 우리 뜻대로 됩니까? 이것이야.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3안 2안을 갖고 논란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 정도 우리 의사를 관계공무원들에게 전달했으니까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청취안을 마쳤으면 해서 불초 본의원이 나와서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議長 柳成烈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김광식의 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당연히 그렇게 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안건이 세안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어느 안을 하나 제시를 해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 세안을 가지고 한가지는 의결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우리 김광식의원님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좋은 대로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타당성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1안, 2안 3안 중에 의회에서는 한가지는 결정을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두가지 안건이 지금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2안과 3안을 놓고 일단 표결을 해서 끝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일단 김광식의원님

의 말씀도 맞지만은 어느 한가지는 선택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 나오는 사항은 구청관계관이나 또한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 경계 조정할 때 반드시 참석을 합니다. 저도 월곡2동에 경계 조정을 할 적에 동대문하고 할때에 가서 참석을 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표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기립으로 해서 표결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2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安敦洙議員 의석에서-의장, 3안으로 해서 안되면은 2안으로 가는 것이지, 꼭 우리가 정해 가지고 할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김광식의원님 말씀대로 욕심대로다 하면은 좋은 것이고 그렇지않으면은 3안 해 가지고 안되었을 경우에는 2안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기립으로써 표결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3안으로 정해놓고 3안은 누가 봐도 우리가 볼 적에는 우리 쪽에 편입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3안으로 정해 놓고 3안으로 해서 안될 때에는 2안으로 가는 이런 방법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3안으로 해 놓았다고 해서 3안이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金光植議員 의석에서-의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2안, 3안을 놓고 우리가 자꾸 표결에 붙이는 것 보다는 어디까지나 협상은 상대가 있으니까 2안 3안을 우리는 관계자들에게 일임하고자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어쨌든 제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그렇게 회의에 규정상 그렇게 해야 끝이 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의장이 말한 대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반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표결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수확인)

의석수를 확인한 바 39명입니다. 현재 재석의원수는 39명이므로 이승로의원님이 발의한 2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 3안 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3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宗鉉委員 의석에서-나는 행정위원회 기권했었습니다. 기권했는데 어떤 것이든 해야될 것 아닙니까? 왜 안일어나요.)

(○李承魯委員 의석에서-그것을 강요를 하지 말아요.)

(○申宗鉉委員 의석에서-아니, 강요 안했어요.)

다른 분은 앉으세요.

(○申宗鉉委員 의석에서-강요 안하는 것인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인중 2안은 8명, 3안은 22명, 기권 9명으로 3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特別市城北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18時01分)

○議長 柳成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시민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들겠습니다. 시민복지위원회 권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福祉委員長 權赫驥

(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議長 柳成烈 네, 시민복지위원회 권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권한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共同住宅建築審議時都市景觀保護對策施行에따른建議(案)(地域開發委員會 提案)

(18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건축심의 시도시경관보호대책시행에따른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지역개발위원회 제안설명을 들겠습니다.

지역개발위원회 이연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開發委員會委員長 李鍊炯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개발위원회 위원장 이연경의원입니다. 저희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제안한 공동주택건축심의시 도시경관보호대책 시행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議長 柳成烈 네, 지역개발위원회 이연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건축심의시도시경관보호대책시행에따른건의(안)을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石串·里門洞地域電動車基地廠建設反對決議(案)(李承魯議員外15人 發議)

(18時14分)

○議長 柳成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석관·이문동지역전동차기지창건설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지역개발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들겠습니다.

지역개발위원회 이승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李承魯 안녕하십니까? 석관·이문동지역전동차기지창건설반대결의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議長 柳成烈 네, 지역개발위원회 이승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석관·이문동지역전동차기지창건설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상발안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금 이따 드릴게요.

여러 의원님, 그리고 심장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5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8時18分 閉會)

○出席議員 40人

丘 在 永 尹 弘 老 李 龍 燮
鄭 昌 萬 金 珉 奭 安 傑 珞

金羅	壽光	榮洙	崔柳	桂成	洛烈	李崔	承東	魯煥
李鉾	鍊鎮	垌武	金金	振榮	權植	金辛	鈴在	基福
朴徐	時榮	俊振	李徐	大化	一錫	高金	允甲	根濟
安尹	敦晚	洙丸	金吳	光榮	植作	權柳	赫興	騏先
宋洪	夏性	星濤	金朴	順景	權錫	崔任	哲泰	模根
申許	宗東	鉉翼	文	京	周	金	東	殷

○缺席委員 2人

金南 孝 趙基 燦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專 門 委 員

○參席公務員

副	區	廳	長
總	務	局	長
財	務	局	長
市	民	局	長
都	市	備	局
建	設	局	長
保	健	所	長
文	化	公	報
企	劃	豫	算
			課
			長

金 鎮 永
崔 石 根

沈	長	錫
白	亨	煥
李	東	湜
尹	守	鉉
朴	石	安
鄭	顯	植
曹	宗	希
李	鍾	淳
宋	政	宰